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의 목적과 같다.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2조(이용계약)

①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항목별 비용

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하여 공단에 급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 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월 이용료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하며,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급한다.

3.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제공 → 사후관리

※ 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서비스 제공 가능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 초과 비용은 100%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③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④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⑤ 급여제공 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⑤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⑥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⑦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⑧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⑨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⑩ 등급변경, 본인부담을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⑪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⑫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근무자가 케어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2.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등급 변경의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변경의 경우 감정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역을 우편 및 유선으로 알린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	-------------------------------	--------------------------------	-------------------------------

-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5. 기능회복훈련지원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영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목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한 후 목욕 여부 결정
 2. 입욕 시 이동보조: 대상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3. 목욕실시: 몸, 머리, 얼굴 등 모든 부위
 4. 목욕완료: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부가서비스 지원 및 뒷정리
 5.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 사항 확인

제8조(수가표)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급여종류	구분	2023년도 수가	본인부담금 (15%)	본인부담금 경감40%(9%)	본인부담금 경감60%(6%)	비 고
방문요양	30분	16,190	2,240	1,450	970	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60분	23,480	3,520	2,110	1,400	
	90분	31,650	4,740	2,840	1,890	
	120분	40,280	6,040	3,620	2,410	
	150분	46,970	7,040	4,220	2,810	
	180분	52,880	7,930	4,750	3,170	
	210분	58,930	8,830	5,300	3,530	
	240분	65,000	9,750	5,850	3,900	
방문목욕	60분이상	46,250	6,930	4,160	2,770	차량 미이용 수가
	40~60분미만	37,000	5,550	3,330	2,220	
	60분이상 (1인 몸씻기)	37,000	5,550	3,330	2,220	
	40~60분미만 (1인 몸씻기)	32,380	4,850	2,910	1,940	

③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